

2015년12월14일 오픈넷 토론

주제 -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아청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토론내용(류한욱)

- **필터링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1. 회사소개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¹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필터링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 기술사업자를 통해 **아주 소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

- **첫 번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는 법으로 정하였으나, 자체적인 필터링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술사업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등록요건에도 검증 된 필터링 사업자의 솔루션을 장착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필터링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아닙니다.

- **두 번째** 아청법에서 말하는 필터링 조치는 원래 저작권법을 인용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차단하려면 권리자를 통해 차단의사를 확인하고 기술업체의 도움을 받아 콘텐츠를 차단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이

1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2.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바로 아청법에서 말하는 필터링 조치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적극적인 필터링 조치가 왜 아청물에서는 그렇지 않느냐하면.. 그건 바로 아청물의 경우엔 권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에선 저작물을 차단해야 할 저작권리자라는 주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청물의 경우엔 차단 주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지. 기술사업자인지. 정부기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의무는 있지만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기술사업자는 기술은 있지만 동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정부기관은 요식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로 처벌만 부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필터링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 면책이나 계도 없이 의무만 가중 된 현행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결국 처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필터링 의무 이행이 불가하여 아청물 차단을 위해 건건이 다운로드 받아 육안으로 검수 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노력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입니다.
-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를 위반 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하겠다는 금번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사건은 이후 항배가 어떻든 간에 정비 되지도 않은 필터링 의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조성에 악재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4. 결론

- 아청물 필터링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적극 가담하여 필터링 기술의 기초가 되는 아청물 원본 파일을 확보한 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또는 기술사업자를 계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제도를 정비 함에 있어 얼마 전 개정된 **2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0조의3 불법음란정보**

2 딸통법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④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

*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같이 시장 환경을 무시하고 정비한 법률은 “*팔통 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사회적 논란 거리가 될 수 있음을 교훈 삼아 시장 환경을 면밀히 살핀 후 실현 가능한 형태로 제도가 정비되길 기대 합니다. 끝.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4.14.]